



제 1140 호

2013년 11월 20일 수요일

선 람	기관의 장

조 례

- 조례 제1162호 남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2
- 조례 제1163호 남동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 4
- 조례 제1164호 남동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7
- 조례 제1165호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11

공 고

- 공고 제2013- 1640호 공시송달공고 21
- 공고 제2013- 1641호 제20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부의안건 공고 22
- 공고 제2013- 1642호 수용재결 정본 공시송달 공고 23
- 공고 제2013- 1647호 "매소홀로 하수암거 설치공사" 출입허가 열람공고 24
- 공고 제2013- 1649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체 직권말소 공고 27
- 공고 제2013- 1650호 남동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열람공고 28
- 공고 제2013- 1653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30

고 시

- 고시 제2013- 117호 도로명주소 고시 39

회 람								
----------------	--	--	--	--	--	--	--	--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배진교

2013년 11월 20일

남동구 조례 제1162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12명”을 “14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장, 보건소장과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장 및 각 분과위원장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역, 성별, 연령 등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2명을 추천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위촉된 당해연도에 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 이유

- 2013년 조직개편으로 국이 신설되고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를 4개 분과로 개편함에 따라 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장, 보건소장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 각 분과위원장으로 구성되는 주민참여민관협의회의 구성을 민·관 동수 14명 이내로 조정하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개선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주민참여민관협의회의 구성 인원 민관위원수 조정 (제24조제1항)
 - 당초 민관동수 12명 이내 ⇒ 변경 민관동수 14명 이내
- 협의회의 민관동수를 맞추기 위해 당연직 위원 외에 위촉직 위원 2명 위촉 근거 규정 신설 (제24조제2항)
-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의 임기 규정 조항 신설 (제24조제3항)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배 진 교

2013년 11월 20일

남동구 조례 제1163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통합기금의 용도) ① 각 기금 조례에서 규정된 용도에 사용하거나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융자할 수 있다.

1. 구의 다른 기금에 대한 자금의 융자
2. 지역사회간접자본사업 등 지역개발 기반시설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3.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

4. 그 밖의 특별회계에 대한 자금의 용자

5. 그 밖의 통합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를 위한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의 용자는 각 기금의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용하여야 한다.

③ 총괄기금관리관은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수립 시 자금의 용자 규모가 제2항에 비추어 적정한 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고,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통합기금 용자기준) ① 통합관리기금운용관은 통합기금의 자금을 용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용자대상의 적정성
2. 재무구조의 건전성
3. 상환 가능성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른 검토결과는 자금 용자를 위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있다.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 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분석과-4170(2012.11.16.)호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패영향평가 분석 결과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기금 및 통합기금관리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함.

□ 주요내용

- 통합관리기금의 용도 규정 정비 (제15조)
- 통합관리기금의 재정용자 기준 신설 (제15조의2)
- 통합기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기금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항 신설 (제18조의2)
- 통합관리기금 일몰제 적용 (부칙 제2조 유효기간 설정)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배 진 교

2013년 11월 20일

남동구 조례 제1164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구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하여 남동구 내 기관·단체 등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사회적 신뢰 형성을 통해 안심하고 살기 좋은 남동구를 만들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치안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치안협의회 설치) 인천광역시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의 질서 확립과 구민의 안전사고 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법질서 확립 및 지역사회 안전관련 주요시책 및 공동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2. 노인·아동·청소년 및 여성의 안전보호에 관한 사항
3. 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에 관한 사항
4. 범죄예방 사회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도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의 법질서 확립 및 안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인천광역시 남동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역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구청장,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장, 경찰서장,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인천남동소방서장, 인천공단소방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협의회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구 관내 기관·단체의 장
2. 노인, 아동, 청소년, 여성분야 관련 전문가
3. 행정, 교육, 언론 및 유관기관·단체의 관계자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과 제4조제3항제1호에 해당되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품위손상 등 위원회 활동을 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심신쇠약 또는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① 협의회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구와 경찰서의 협의회 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사항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협의회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
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반기별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0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산하에 기관·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간사가 주관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 위원은 협의회 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해당업무 부서의 장 및 단체의 업무 관계자로 한다.

④ 실무협의회는 필요시 수시 개최한다.

제11조(사업지원 등) ① 구청장은 협의회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치안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을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 및 시행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구청장은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인천광역시남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 이유

- 법질서 확립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한 구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하여 남동구 내 기관·단체 등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긴밀한 치안업무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안심하고 살기 좋은 남동구를 만들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치안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에 관한 사항 규정 (제1조)
-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 규정 (제2조)
- 지역치안협의회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 규정 (제3조 및 제4조)
- 지역치안협의회 위원의 임기, 위·해촉 및 임무에 관한 사항 규정 (제5조부터 제7조까지)
- 지역치안협의회 간사에 관한 사항 규정 (제8조)
- 지역치안협의회 회의에 관한 사항 규정 (제9조)
- 실무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제10조)
- 사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제11조)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배 진 교

2013년 11월 20일

남동구 조례 제1165호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나. 인천광역시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

2. “선물”이란 대가 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 “향응”이란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등) ① 이 강령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에게 적용한다.

② 이 강령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이 강령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등) 의원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이하 “안전심의 등”이라 한다)이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또는 안전심의 등 관련 활동을 공정하게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장과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사전에 그 사실을 소명(疏明)하고 스스로 안전심의 등 관련 활동을 회피할 수 있다.

제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의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의회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6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의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의 임용·승진·전보·포상·징계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검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구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심의회·협의회 등(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 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1.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2.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8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① 의원은 그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의회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의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등) 의원은 각종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 의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2.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다만, 온천장, 관광지 또는 유흥시설을 갖춘 장소 등에서 제공하는 음식물 또는 편의는 제외한다.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이벤트 등에서 추첨 등 무작위 선정방법으로 참가자에게 주는 금품 등

② 의원은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제1항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의원 간 금품 등 수수 행위 금지) 의원은 의회 내의 선거 등 직무와 관련하여 의원 간에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4장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의 조성

제13조(국내외 활동 제한 등) ① 의원은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전에 그 활동의 사유·경과,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기관·단체 및 지원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원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아 국내외 활동을 마친 경우에는 그 활동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 내용 및 제2항에 따른 활동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의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회의 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영리행위의 신고) 의원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제한하는 영리행위 외에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금전 거래 등 제한) ① 의원은 상호간에 또는 직무관련자와 금전 거래를 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의원 상호간에 또는 직무관련자와 금전 거래를 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으려는 의원은 이를 사전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① 의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에게 알리는 경우
2. 해당 지방의회의 의원 및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② 의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의장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친족으로부터 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인 경우
2.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인 경우

제18조(성희롱 금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원 상호간 또는 소속 사무처 직원에게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행동강령 위반 시의 조치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의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의장은 신고사항이 이 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그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제22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④ 의장과 제22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하면 해당 의원으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 「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등) ① 제11조, 제12조 및 제17조 제2항을 위반하여 수령이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받거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이러한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실을 알게 된 의원은 금품 등을 제공한 자(이하 “제공자”라 한다)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품 등을 반환한 의원은 그에 대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의장에게 신고한 후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품 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제공자,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 등, 제공일시 및 처리경위 등을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장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

제21조(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해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의원의 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내외 활동의 증인에 관한 사항
3.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의원의 강령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행동강령의 운영 및 이행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구성 및 임기) ① 자문위원회는 의장 소속 하에 둔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민간위원은 학계·법조계·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행동강령의 운영과 관련되어 공정성·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위원이 되지 못한다.

1. 구 공무원
2. 구의회 의원
3. 정당의 당원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추천 받은 자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항 각 호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전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총 수(數)는 전체 위원 수(數)의 2분의 1 미만인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 사퇴, 품위손상, 기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⑥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23조(위원장) ①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이해관계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되기 전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당해 사안의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② 위원이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의 회의에서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2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의장으로부터 서면으로 자문 요청을 받은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부터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 및 장소, 회의 안건 등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출석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이어야 한다.

③ 제24조에 따라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에 따라 부의 안건을 서면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간사) ①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남동구의회사무국 의정담당으로 한다.

제27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하거나 구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8조(의결사항 통지) 위원장은 자문 의결 후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자문위원의 비밀유지 의무)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회의록)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성명
3. 회의(자문) 내용

제31조(수당 지급) 의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위원회에 출석하는 민간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운영세칙) 이 장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문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3조(행동강령의 운영) ① 의장은 의원에 대한 이 강령의 교육·상담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② 의장은 이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의회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 이유

- 2003년부터 시행되어 온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은 집행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적합하게 되어 있으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직접 적용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어,
- 주민의 대표자인 지방의회 의원의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돕기 위해 지방의회 의원의 신분적 특성을 고려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이 2010년 11월 제정되어 2011년 2월에 시행됨에 따라, 남동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과 위임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에 기여하기 위함.

□ 주요내용

- 대통령령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15개 행위기준 명시
 - 공정한 직무수행 명문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사항 명시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 건전한 지방의회풍토의 조성 명시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
-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제19조)
-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운영 명시 (제21조부터 제33조까지)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3-1640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5조 규정에 의거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폐문부채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18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 공고기간 : 2013년 11월 18일 ~ 2013년 12월 3일
- 공고방법 : 홈페이지, 구보 등
- 공고의 내용

1. 처분의 제목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		
2. 당사자	성 명	김명철	주민등록 번호	570411-1*****
	주 소	인천 중구 남북로87번길82(남북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 통지		
4. 부동산의 표시		인천 남동구 간석동 611-8 2층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과징금 부과액 : 금70,277,260원(금칠천이십칠만칠천이백육십원정) ※과징금을 납부하실 경우 남동구청 토지정보과에서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2014.01.16까지 가까운 시중은행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법적근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		
7. 유의사항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문의처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토지정보과 (032-453-2484)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 2013 - 1641호

부 의 안 건 공 고

「지방자치법」 제46조(부의안건의 공고)의 규정에 의거 제20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안 건 명

-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맑은터전 남동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만수동 109-99 일원 공영주차장 건설】
 - 【구월1동 청사 신축】
-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공고기간

- 2013. 11. 19 ~ 제20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종료 시까지

3. 기 타

- 부의안건의 내용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기획예산실(☎453-2093)에 비치하였으며, 또한 남동구 홈페이지를 통한 열람(공람)이 가능합니다.

2013년 11월 19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13 - 1642호

수용재결 정본 공시송달 공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 [도림3지구 소-1호선, 소3-7호선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2013.11.11일자 수용재결서 정본을 소유자 및 관계인 등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송달받을 자의 주소불명으로 송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관계인께서는 공고 기간 내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11월 19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사업 시행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2. 사업의 종류 : 도림3지구 소3-1호선, 소3-7호선 도로개설공사
3. 사업의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일원
4. 공 고 기 간 : 2013. 11. 19 ~ 12. 4
5. 재결서정본 수령장소 : 인천광역시남동구 도시관리과(032-453-2991)
- 6 공시송달내용 : 인천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서 정본
7. 공시송달대상 : 관계인

○ 조※석 :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풍동 482-3

8. 기타

재결서 정본은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2주일이 경과한 후에는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3 - 1647호

토지출입 통지 열람공고

인천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매소홀로 하수암거 설치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토지출입 통지 요청이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점유자 등께서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11월 19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자 : 인천도시공사
2. 사업의 명칭 : 매소홀로 하수암거 설치공사
3. 출입할 토지 : “별첨” (남동구청 도시관리과 비치)
4. 출 입 기 간 : 2013. 11. 25 - 2014. 6. 30
5. 출 입 목 적 : 토지 및 물건 조서 작성을 위한 측량 및 조사
6. 열 랐 기 간 : 2013. 11. 29 - 2013. 12. 4(15일간)
7. 관 련 법 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의 토지 출입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그 토지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조
 - 토지점유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통지를 한 사업시행자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하고 출입측량 또는 조사하는 행위를 방해하지 못한다.
8. 기 타 사 항
 - 출입토지 목록은 남동구청 도시관리과에 비치하고 열람하며 의견이 있으신 소유자 · 이해관계인께서는 인천도시공사(판매처 032-260-5572)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실시계획인가 토지조서

고시 일련 번호	동명	지번	지 목	공 부	편 입 면 적 (㎡)		잔 여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도로내	도로외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1	구월동	823-2	천	506.0		53.0	453.0		인천광역시			방류부
2	구월동	823-1	천	360.0		281.0	79.0		인천광역시			방류부
3	구월동	828-4	천	112.0		112.0			인천광역시			방류부
4	구월동	811-6	천	6,624.0		260.0	6,364.0		인천광역시			방류부
5	구월동	811-5	제	5,118.0		118.0	5,000.0		인천광역시			방류부
6	구월동	827	전	593.0		322.0	271.0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201- 140 그랜드빌 비01호	김**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311	국민건강 보험공단	압류
7	구월동	827-5	도	1,249.0	159.0		1,090.0		인천광역시			도로중복
8	구월동	787-1	도	29,302.0	657.0		28,645.0		인천시 남동구			도로중복
9	구월동	827-8	전	477.0	198.0		279.0		인천도시공사			도로중복
10	구월동	826-4	전	1,640.0	546.0		1,094.0		인천도시공사			도로중복
11	구월동	833-3	전	611.0	92.0		519.0		인천도시공사			도로중복
12	구월동	826-5	전	506.0	310.0		196.0		인천도시공사			도로중복
13	구월동	826-26	전	148.0	4.0		144.0		인천도시공사			도로중복
14	구월동	826-22	전	1,190.0	458.0		732.0		인천도시공사			도로중복
15	구월동	826-28	구	190.0	75.0		115.0		인천도시공사			도로중복
16	구월동	826-30	전	1,235.0	475.0		760.0		인천도시공사			도로중복
17	구월동	793-9	답	768.0	289.0		479.0		인천도시공사			도로중복
18	구월동	793-7	전	891.0	348.0		543.0		인천도시공사			도로중복
19	구월동	794-3	전	1,515.0	635.0		880.0		인천도시공사			도로중복
20	구월동	799-3	전	1,345.0	608.0		737.0		인천도시공사			도로중복
21	구월동	1072-68	도	115.0	42.0		73.0		(국)건설부			도로중복
22	구월동	757-5	답	312.0	121.0		191.0		인천도시공사			도로중복
23	구월동	757-3	답	394.0	41.0		353.0		인천도시공사			도로중복
24	구월동	758-3	답	2,161.0	920.0		1,241.0		인천도시공사			도로중복
25	구월동	759-3	답	909.0	279.0		630.0		인천도시공사			도로중복
26	구월동	760-5	전	970.0	527.0		443.0		인천도시공사			도로중복
27	구월동	761	전	327.0	108.0		219.0		인천도시공사			도로중복
28	구월동	1072-70	도	359.0	86.0		273.0		(국)건설부			도로중복
29	구월동	762-1	전	585.0	116.0		469.0		인천도시공사			도로중복
30	구월동	743-1	전	483.0	105.0		378.0		인천도시공사			도로중복
31	구월동	744-4	구	297.0	96.0		201.0		인천도시공사			도로중복
32	구월동	744-11	답	3,585.0	581.0		3,004.0		인천도시공사			도로중복
33	구월동	744-9	구	195.0	32.0		163.0		인천도시공사			도로중복
34	구월동	1081-6	구	274.0	38.0		236.0		(국)농림부			도로중복
35	구월동	717-2	도	27.0	3.0		24.0		인천도시공사			도로중복
36	구월동	717-1	전	913.0	76.0		837.0		인천도시공사			도로중복
37	구월동	717	도	83.0	15.0		68.0		인천도시공사			도로중복
38	구월동	1068-19	도	133.0	7.0		126.0		(국)재무부			도로중복
39	구월동	701-1	전	1,310.0	97.0		1,213.0		인천도시공사			도로중복
40	구월동	700-5	전	157.0	6.0		151.0		인천도시공사			도로중복
합 계				67,969.0	8,150.0	1,146.0	58,673.0					

☐ 실시계획인가 지장물 조서

번호	동 명	지 번	종 류	구조 및 규격	총 면 적 (㎡)	편입 면적 (㎡)	잔여 면적 (㎡)	소 유 자		비 고
								주 소	성 명	
1	남동구 구월동	827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	354.0	354.0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그랜드빌 비01호	김**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3 - 1649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체 직권말소 공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폐업 및 직권말소)를 위반하여 영업을 폐지하고도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게임제공업자(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직권말소의 확인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등록사항을 직권말소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3. 11. 19. - 2013. 12. 10.(21일간)

○ 직권말소 내역

등록번호 (등록일자)	상 호 명	영 업 소	대 표 자	위반내용	행정처분 내역
제2008-97호 (2008.7.21)	마곳간PC방	호구포로810번길 52, 201호 (구월동 1261-1)	장*식 (73****-1)	영업폐지 후 폐업신고 미이행	<u>직권말소</u> (13.11.19)

○ 법적근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폐업 및 직권말소)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직권말소의 확인 등)

○ 처분에 따른 이의신청

- 행정심판법 제27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청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처분기관 및 문의처

- 처분기관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문화체육과)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만수동 1008번지)
- 문 의 처 : 032)453-2143 (FAX 453-2139)

2013년 11월 19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3-1650호

남동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열람공고

지구온난화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비번하게 발생하여 산사태위험이 매우 높아짐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심의를 완료하고 동법 제45조의8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0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공 고 명 : 남동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열람공고
2.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 발생 우려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관리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사방(예방)사업을 시행하고자 함
3. 대 상 지 : 인천 남동구 만수동 산6-2번지 외 5개소(9필지-붙임참고)
4. 공고기간 : 2013. 11. 20. ~ 12. 19(30일간)
5. 이의신청 : 2013. 11. 25. ~ 12. 19(25일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산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남동구청 공원녹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공원녹지과
(전화 032-453-2870, 팩스453-2849)
6. 지정예정일 : 2013. 12. 20.(이의신청 결정통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7. 산사태취약지역 행위제한 : 붙임 참고
8. 경과조치 : 위 기간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이해관계자로부터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함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 공원녹지과(032-453-228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내역 1부. 끝.

남동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내역

심의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소유자		비고
	시·도	시·군	동			(㎡)	(㎡)	성명	주소	
계						1,430,197	6,600			
제2013-1호	인천	남동구	만수	산6-2	임	137,891	1,000	산림청		
제2013-2호	인천	남동구	만수	산1-2	임	246,236	500	김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3-4 롯데캐슬	
	인천	남동구	만수	산1-1	임	37,388	300	국방부		
	인천	남동구	만수	산21-3	임	18,062	100	대한예수교오순절성회인천만수교회/남동구청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2동 1-118	
	인천	남동구	만수	1-426	임	14,022	100	김남*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7길 37	
제2013-3호	인천	남동구	간석	산18	임	12,298	1,000	장세*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215번지	
제2013-4호	인천	남동구	장수	산4-2	임	313,722	1,000	국방부		
제2013-5호	인천	남동구	장수	산78	임	597,837	2,000	인천광역시		
제2013-6호	인천	남동구	운연	산76	임	52,741	600	산림청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13 - 1653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제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11월 19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조 례 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국가시책 수요 반영 및 공무원 직종개편을 위한 「지방공무원법」 시행(‘13.12.12)에 따라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복지인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직렬·직급 조정을 통해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을 운용코자 함.
3. 주요 개정내용 : [별표] 기관별·직급별 정원 일부개정
 - 가. 특수안전수요 (1명/본청) 반영 : 총 정원 882명 → 883명
 - 나. 기능직공무원(76명) 일반직 해당직급으로 전환 : 정원변동 없음

구 분	계	정무직	일 반 직							별정직
			소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증 감	+1	-	77	-	-	9	34	30	4	-
현 행	882	1	881	7	59	184	264	240	48	3
개정(안)	883	1	882	7	59	193	298	270	52	3

※ 특수안전수요 1명 반영

다. 사회복지인력 직렬·직급 조정 : 행정5급 (2명) → 행정·사회복지5급 (2명)

기관별 직급별	현 행						개정(안)					
	총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 소	동	총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 소	동
총 계	882	560	19	71	17	215	883	561	19	71	17	215
5급 소계	59	28	2	8	2	19	59	28	2	8	2	19
행정	36	19	2	-	1	14	34	18	2	-	1	13
행정·사회복지	-	-	-	-	-	-	2	1				1

※ 조정되는 직렬·직급만 표시

4. 관계법령

가. 지방공무원법 부칙[법률 제11531호, 2012.12.11] 제4조

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5.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년 11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참조 : 기획예산실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405-702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 ☎ 453-2052, FAX 453-205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6. 개정조례(안) :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별첨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제출년월일 : 2013년 11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국가시책 수요 반영 및 공무원 직종개편을 위한 「지방공무원법」 시행(‘13.12.12)에 따라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사회복지직의 직렬·직급별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복지인력의 사기진작 제고 등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을 운용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별표] 기관별·직급별 정원 일부개정

- 특수안전수요 (1명/본청) 반영 : 총 정원 882명 → 883명
- 기능직공무원(76명) 일반직 해당직급으로 전환 : 정원변동 없음

구 분	계	정무직	일 반 직							별정직
			소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증 감	+1	-	77	-	-	9	34	30	4	-
현 행	882	1	881	7	59	184	264	240	48	3
개정(안)	883	1	882	7	59	193	298	270	52	3

※ 특수안전수요 1명 반영

- 사회복지인력 직렬·직급 조정(2명) : 행정5급 → 행정·사회복지5급

기관별 직급별	현 행						개정(안)					
	총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 소	동	총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 소	동
총 계	882	560	19	71	17	215	883	561	19	71	17	215
5급 소계	59	28	2	8	2	19	59	28	2	8	2	19
행정	36	19	2	-	1	14	34	18	2	-	1	13
행정·사회복지	-	-	-	-	-	-	2	1				1

※ 조정되는 직렬·직급만 표시

□ 본 문 : “별첨”

남동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관리기관별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될 때까지 각각 해당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기관별 · 직급별 정원 (제2조 관련)

직급별 \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 계	883	561	19	71	17	215
정무직 계	1	1				
구 청 장	1	1				
일반직 계	879	557	19	71	17	215
3급 소계	1	1				
행 정	1	1				
4급 소계	6	4	1	1		
행 정	4	3	1			
기 술	2	1		1		
5급 소계	59	28	2	8	2	19
행 정	34	18	2		1	13
행 정 · 사회 복지	2	1				1
의 무	4			4		
시 설	3	3				
행 정 · 보 건	2			1		1
행 정 · 환 경	2	1				1
행 정 · 시 설	2	2				
의 무 · 간 호	1			1		
행 정 · 사 서	1				1	
행정 · 녹지 · 시설	3	1				2
행정 · 보건 · 간호	1			1		
행정 · 공업 · 환경	2	1				1
행정 · 농업 · 해양수산	1	1				
행정 · 보건 · 의료기술	1			1		
6급 소계	193	145	6	16	5	21
행 정	100	74	6		3	17
세 무	6	6				
전 산	1	1				
사 회 복 지	6	6				
공 업	2	2				
녹 지	1	1				
보 건	3			3		
환 경	3	3				
시 설	15	15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동
방	송 통 신	1	1				
행	정 · 세 무	3	3				
행	정 · 사 회 복 지	11	9				2
행	정 · 사 서	2				2	
행	정 · 공 업	2	2				
행	정 · 농 업	1	1				
행	정 · 녹 지	1	1				
행	정 · 보 건	2			2		
행	정 · 환 경	3	3				
행	정 · 시 설	4	4				
녹	지 · 시 설	1	1				
보	건 · 의 료 기 술	1			1		
보	건 · 간 호	5			5		
공	업 · 시 설	1	1				
공	업 · 환 경	1	1				
의	료 기 술 · 간 호	1			1		
행	정 · 해 양 수 산	1	1				
행	정 · 공 업 · 시 설	1	1				
행	정 · 보 건 · 간 호	1			1		
행	정 · 공 업 · 환 경	1	1				
보	건 · 의 료 기 술 · 간 호	2			2		
행	정 · 사 회 · 시 설	1	1				
전	기 운 영	1	1				
기	계 운 영	1	1				
운	전	4	1		1		2
사	무 운 영	3	3				
7급 소계		298	192	7	22	5	72
행	정	121	72	3	1	3	42
세	무	25	25				
전	산	3	3				
사	회 복 지	29	8				21
공	업	4	4				
농	업	1	1				
녹	지	6	6				
해	양 수 산	1	1				
보	건	9			9		
의	료 기 술	4			4		
간	호	5			5		

직급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동
환	경	8	8				
시	설	34	34				
방 송 통 신		2	2				
행 정 · 사 회 복 지		2	1				1
행 정 · 사 서		2				2	
공 업 · 환 경		1	1				
농 업 · 수 의		2	2				
보 건 · 간 호		3			3		
공 업 · 시 설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1	1				
건 축 운 영		1	1				
전 화 상 담 운 영		1	1				
전 기 운 영		1	1				
기 계 운 영		2	2				
운 전		13	6	1			6
속 기		3		3			
사 무 운 영		13	11				2
8급 소계		270	158	3	18		91
행	정	123	72	1	1		49
세	무	10	10				
전	산	4	4				
사 회 복 지		33	10				23
공	업	7	7				
농	업	2	2				
녹	지	5	5				
보	건	8	1		7		
의 료 기 술		5			5		
간	호	3			3		
환	경	6	6				
시	설	23	23				
방 송 통 신		3	3				
행 정 · 사 회 복 지		4	2				2
보 건 · 간 호		1			1		
공 업 · 시 설		1	1				
공 업 · 환 경		1	1				
행 정 · 해 양 수 산		1	1				
기 계 운 영		2	1	1			
운 전		11	1				10
사 무 운 영		16	8	1			7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동
	간 호 조 무	1			1		
	9급 소계	52	28	-	6	5	13
행	정	22	5			5	12
세	무	4	4				
전	산	1	1				
사	회 복 지	5	5				
녹	지	2	2				
보	건	5			5		
시	설	4	4				
행	정 · 사 회 복 지	5	5				
행	정 · 방 재 안 전	1	1				
운	전	3	1		1		1
	별정직 계	3	3				
	5급 상당 소계	1	1				
	비서실장	1	1				
	6급 상당 소계	1	1				
	비서실장	1	1				
	7급 상당 소계	1	1				
	비서요원	1	1				
	8급 상당 소계						
	비서요원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고 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 2013 - 117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따라 건물 등에 변경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19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 변경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로 161

변경 전 종전지번	변경 후 종전지번	변경 전 도로명주소	변경 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변경고시일	변경 사유	비 고
별 도 열 람(1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토지정보과(☎032-453-2470)에 문의 또는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3. 11. 19.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2013. 12. 31.까지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남동구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 조서

연번	변경 전 종전지번		변경 후 종전지번		변경 전 도로명주소			변경 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변경고시일	변경 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79-72외 33필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76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로	161	인천광역시 남동구	변경사항없음	2013.11.19	토지개발 사업완료	